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8
----------	-----

2023. 9. 19.(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23년 8월 29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 9월 7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정국장 민영완)

가. 제안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용어의 정의규정 등 일부 조문을 법제처 입안 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성격에 맞게 목적규정에서 불필요한 인용법령 삭제
(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규정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2조)
- 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요건 변경(안 제5조)
- 라. 전문교육기관의 명칭과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수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이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한 규정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정의, 맞춤법, 문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를 “충청북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도내 출연·연구기관”을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기준
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및”을 “충청북도자치
연수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그 밖의”로,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u>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충청북도</u> ----- ----- -----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농촌</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p> <p>2. “<u>농업인등</u>”이란 「<u>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u>농촌융복합산업</u>”이란 <u>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충청북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도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도내 출연·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0조(전문교육)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전문교육) -----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그 밖의 -----
----- 실시할 -----.

<삭 제>

관련법령 발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

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의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촌융복합산업지구”란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한다.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4.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6.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
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9.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

○ 첨부제의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요건 변경 및 인용조항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농업정책과장 이수현